

제 90회 제 1차 목포시의회 회의록

1. 개 의 : 단기 4291년 11월 11일 상오 10시 30분

2. 폐 의 : 단기 4291년 11월 11일 하오 4시 30분

3. 장 소 : 목포시 의회 의사당

4. 사 회 : 부의장 강 영 락

5. 출석의원 : 재적 16명 중 출석의원 13명
결석의원 김남진, 박두순, 김창희 의원

6. 출석 공무원 : 시장 하동현 및 각 과장
교육감 박세문 및 사무장, 교육장

7. 의사일정

◆ 보고사항

- 1) 제 89회 제 1차 회의록 통과
- 2) 제 89회 제 2차 회의록 통과
- 3) 각 의원 관외출장 결과보고
- 4) 유달교 실습지 조사결과보고

◆ 부의안건

- 1) 단기4291년 제 7회 목포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 경정예산안
- 2) 단기 4291년 제 3회 목포시 동정 특별회계 세출경정 예산안
- 3) 단기 4291년 제 2회 목포시 교육위원회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 4) 단기 4291년 목포시 교육 위원회 일시 차입안

8. 토의사항

◎ 제 89회 제 1차 회의록 통과

◇서기 박찬대

- 낭독
- 이의 없음으로 통과

◎ 제 89회 제 2차 회의록 통과 이의 없음으로 통과

◎ 유달 국민학교 실습지 관계조사 결과보고

◇김 성 균 의원 보고

- 생략 별첨 보고서와 같음

◇정 응 표 의원

- 김성균 의원의 보고에 의하면 저번 의회시 본 의원이 집행부 측에 질문한바 있는 박세문씨가 김영완씨에게 승낙서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에서는 어떠한 이유로 박종오씨에게 이전수속을 하여주었는가에 대하여 제반 절차를 생략하기 위한 김영완씨의 간청으로 박씨에게 직접하여 주었다는 답변을 시인하였는데 이번 조사에 김영완씨로부터 박종오씨에게 이전하여 달라는 신청서가 있음을 사후에 합법화시키기 위한 수단이라 지적하겠는데 그 이유 여하

◇이 정 권 의원

- 조사위원회 측에서 학교재산이나 사친회 재산이나의 견해를 단정 하여주기 바란다.

◇정 응 표 의원

- 본 건 매도가격이 그 당시의 시가에 비하여 차이점 유무여하

◇김 성 균 의원

- 정응표 의원이 발언한 산업과에 비치된 김영완씨의 신청서는 사후에 추

비한 것이 아니고 계원의 착오로 그 당시에 제시 못한 것이며 시가에 대하여는 방금 보고한 내용과 동일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정권 의원이 질문한 학교재산이나 사친회 재산이냐의 문제는 조사위원회로서는 학교재산으로 단정을 내리는 것입니다.

◇정 응 표 의원

- 본 건 조사위원단 측의 보고는 끝났으니 의사결정을 변경하여 부의안건으로 즉각 정식 상정할 것을 동의하여 재청에 이어 삼청이 있어 표결한 결과 만장일치로 가결되다.

- 명남철 의원 퇴장 재석 12명

◎ 유달 국민학교 실습지 매각 처분의 건

◇정 응 표 의원

- 본 건 박교육감의 의견을 청취하고 의회의 태도를 결정짓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김 상 태 의원

- 박교육감은 유달학교장 사무인계당시 박교육감에게 그 사무일체를 인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권리와 이유로써 김영완씨에게 승인서를 발부하였는가

◇조 양 순 의원

- 박교육감은 전차의회에서 사친회 재산이라고 규정을 지었는데 김성균 의원의 보고와는 판이한 이유는 무엇인가

◇이 정 권 의원

- 90년 8월 29일에 본 실습지의 상황이 완료되었으니 그 즉시부터 학교재산으로 취득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당년 9월 30일에 김영완씨에게 승인서를 발부하였다는 것이 모순이다.

◇박 교육감

- 국민학교 재산이라고는 있을 수 없는 것이고 사친회역원들이 나서 가지고 사업을 한 것이기 때문에 사친회재산으로 규정을 지었던 것입니다.

◇김 경 인 의원

- 본 건 조사위원 측은 학교재산이라고 규정을 내리고 교육감은 사친회재산이라 고집을 하는데 조사위원의 규정이 타당한 귀결이라 아니할 수 없는 것이다. 예를 들면 학교비품 등을 사친회에서 구입하였다하여 결론이 사친회재산이 되겠으며 동사무소 건물 등을 동민들이 샀다하여 시유재산이 안되겠느냐는 말이다. 박교육감의 사고방식이 틀렸으니 이를 시정하여주기 바란다.

◇김 성 균 의원

- 유달 국민학교 온실을 사친회 재산으로 구득하였으니 사친회 재산으로 규정짓겠는가

◇김 경 인 의원

- 박교육감이 현재까지는 사친회 재산으로 인정하였지만은 조사위원단의 보고를 청취한 후의 의견은 어떠한가

◇박 교육감

- 사친회재산으로 규정 지을 수밖에 없다.

◇정 응 표 의원

- 학교 재산으로 환원시킬 의향은 없는가

◇김 경 인 의원

- 본 건 왈가왈부할 필요조차 없다. 왜정말엽부터 학교 실습지로서 역대교장의 인계서류에 등재하여 왔다는 사실만 가지고도 교육위원회 재산으로 규정 지을 수 있는 것을 당시의 교장이었고 5개 국민학교를 관할하는 행정 책임자인 교육감이 사친회 재산이라고 고집하고 있으니 다만 당 의회의 결의로서 교육감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법적 귀결을 짓도록 할 것을 동의하는 바이다. 재청에 이어 삼청이 있었다.

◇김 상 대 의원

- 동의는 성립되었지만 교육감은 어떠한 근거 밑에 끝까지 사친회 재산이라고 고집하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다.

◇정 응 표 의원

- 현 시의원인 명남철씨 전 교육위원 이우양씨 전 도의원 홍익선씨 전 시의원 김영완씨등 쟁쟁한 인사들이 학교 사친회 역원으로서 문제의 토지를 사친회 재산으로 규정짓고 본 건 매각 추진 위원회를 구성하여 서명 날인까지한 사실을 상기할 때 현 교육감도 사친회 재산이라고 규정 지었다는 것이 동기였다면은 오늘날의 본 회의에서 조사결과를 청취한 후의 교육감태도로서 학교 재산으로 반환시킬 용의는 없는가

◇의장 김 삼 성

- 본 건 학교재산인가 사친회 재산인가 혼동하여오다가 학교를 위하여 온 실로 전용시킬 필요성이 있어 그리된 것 같으니 법적 절차를 취하는 것보다 연구기간을 주는 의미에서 일단 보류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김 경 인 의원

- 박교육감은 금일의 조사위원단의 결과보고를 듣고 허심 탄회한 입장에서 반복됨이 있으리라고 믿어 졌는데 끝까지 사친회재산이라고 고집하는 것을 보면 과거 유달학교교장 재직당시 모종불미한 사실이라도 개재된 것 같은 감을 주는 것이며 본 의원이 행정소송을 제기하자고 동의한 것은 동일 자치단체 내에서 의결부가 집행부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다는 것이 대내외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심대하다는 기우심도 있으나 부득이 한 일인 것입니다.

◇박 교육감

- 본 인은 사친회 재산이라고만 알고 있었을 뿐 따름이지 본 건에 대하여 호리의 부정도 개재안 되었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정 응 표 의원

- 본 건 조사위원단의 보고만으로서 학교 재산으로 규정지을 것이 아니라

당 의회의 태도를 결정하기 위하여 학교 재산이나 사친회 재산인가의 결정을 짓도록 할 것을 동의하여 재청에 이어 삼청이 있어 표결한 결과 학교재산으로 규정지을 것을 만장일치로 가결되다.

◇부의장 강 영 락

- 오전 회의 중지 선언하다. (하오 12시 30분 현재)

- 오후 회의 속개 선언하다. (하오 1시 50분 현재)

- 오전 회의에서 김경인 의원의 행정소송동의를 성립되어 보류중이니 이에 대한 논의를 요망한다.

◇박 교육감

- 학교재산이고 사친회 재산이고 표리일체의 재산일 것이며 그 학교의 목적 재산에 사용한 것이며 경과지사(지난 일)이오니 선처를 바라는 바입니다.

◇이 정 권 의원

- 학교 재산으로 규정지은 다면 재산처분결의가 있어야 할 것이 아닌가

- 김일섭 의원 퇴장 재석 11명

◇정 응 표 의원

- 학교를 위하여 존립한 것이 사친회이며 이것이 학교재산으로 귀결되었을 때 이정권 의원이 발언한바 같이 취득결의와 예산조치도 필요할 것이다. 교육감으로서 이를 시인한다면 이를 정당하게 매도하였는가 또 정당하게 사용하였는가를 조사하기 위하여 조사단구성을 하는 것이 선결문제일 것 같다.

◇조 양 순 의원

- 정응표 의원의 발언에 찬성하면서 금반의 조사단을 구성할 적에는 사친회 장부일체를 제시하도록 교육감이 지시할 것을 첨가하자.

◇김 경 인 의원

- 오전회의에서 본 의원이 소송제기 동의를 발의하여 성립까지 되었으나 교육감이 학교재산이라고 단정을 하여준다면 정응표 의원의 발언에 조정용 의도 있는 것이다.

◇박 교육감

- 여러 의원들이 학교 재산이라고 규정 지어 주신다면 그대로 따라가겠습니다.

◇김 경 인 의원

- 본 의원은 가능한 한 오전회의의 동의를 철회하려고 그 뜻을 내포하여 발언하여도 교육감은 시종 애매한 답변으로 끝이니 이해하기 곤란하다.

◇박 교육감

- 학교재산으로 인정하겠습니다.

◇김 경 인 의원

- 오전회의에서 동의한바 있는 골자는 상호의 의견을 결정 짓기 위하는데 그이유가 있으나 방금의 교육감의 증언에 의하면 학교재산으로 결정 지었으니 이 문제를 확대시킬 것이 아니라 본인의 동의를 철회하겠으니 찬성의원들의 양해 있으시기를 바라는 바이다.

◇부의장 강 영 락

- 김경인 의원의 동의 철회 되었음을 선언하다.

◇정 응 표 의원

- 이제는 쌍방이 학교재산으로 인정하였으니 그 뒷처리로서 본 건의 귀결을 짓기 위하여 조사위원단 3인을 구성 차기의회에 보고토록 하되 이의 지명은 의장에게 일임할 것을 동의하여 재청에 이어 삼청이 있었다.

◇김 경 인 의원

- 교육감에게 참고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박교육감은 사건에 대하여 유달 국민학교와 관련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조흔한 처서를 한 것이 유

감스러우며 교육세법개정이라 시민의 부담이 과중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교육감 취임후 1년 유여가 되도록 시내 5개 국민학교에 산재한 유형 무형의 재산파악조차 못하고 있다는 것이 지적 않을 수 없는 것이다. 80여만환에 매각된 대금을 학교 운영경비에 정당히 사용하였는가의 여부가 밝혀질 기회가 될 것을 믿고 정의원의 동의에 4청하는 바이다.

◇정 응 표 의원

- 산업과의 서류관계도 겸하여 조사하여주기 바란다.

◇김 성 균 의원

- 또다시 본 건 조사위원단을 구성한다는 것은 금반의 조사위원을 불신하는 것밖에 아니다. 해재산을 합법적으로 매도하였다는 것을 밝혔으며 단지 그 용도와 이에 대한 경리대장은 조사대상이 될지 모르나 산업과 서류를 다시 조사하라는 것은 이해하기 곤란하다.

◇김 경 인 의원

- 종전의 조사단은 학교재산이나 사친회재산이나를 밝히는 조사이었고 정응표 의원이 동의한 조사위원은 어느 면에 어떻게 정당히 사용하였는가 여부를 조사하는 것일 것이다.

- 정응표 의원 동의 표결결과는 만장일치로 가결되다.

◇부의장 강 영 락

- 조사위원으로 정응표, 김상태, 강영락 의원을 지명하다.

◎ 관외 출장 결과보고

◇김 상 대 의원

- 상대관계 유치운동차 문교부를 방문 교섭하였다는 요지의 결과보고 내용 생략

김삼성, 정응표 의원 보충보고 생략

◇부의장 강 영 락

- 부의 안전상정 선언

◎ 단기 4291년도 제 7회 목포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단기 4291년도 제 3회 목포시 동정특별회계세출 경정예산안

◇서기 박 찬 대

- 제안이유 설명

◇정 응 표 의원

- 1) 본청추경 예산안을 제안할 적에는 앞으로 설명서를 첨부하여주기 바란다.
- 2) 동직원 임시 직원들은 5%해당액을 증봉하였는데 시립병원과 청소사업소인부에게는 차별대우를 한 것은 모순이다. 이의 원인 여하
- 김상대 의원 퇴장 재석 9명

◇이 정 권 의원

- 1) 보건시설비에서 44만환을 감한 이유여하
- 2) 동특경정예산에 선진지 시찰여비를 계상한 이유여하
- 3) 저반 의회에서는 임시직원과 동직원에 한하여 증봉하도록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도비직원과 인부까지 인상하였는데 이의 재원 및 이유여하
- 4) 본청 특별 관공비증가 이유여하

◇조 양 순 의원

- 도비직원은 도에서 보조가 있을 것인데 시비에서 계상한 이유여하

◇김 경 인 의원

- 동특예비비는 시비보조인 모양인데 신년도에 임하여 적자보전의 방안여하

◇박 찬 대 시정 주무 답변

- 1) 도비직원과 임시 직원 등의 증봉재원은 각 과 실행예산에서 무리한 액을 삭감하여 계상하였습니다.
- 2) 시립병원과 청소사업소인부의 증봉차별이라 함은 냉대한 것이 아니고 부득이한 조치였습니다.
- 3) 본 청 특별관공비 증가이유는 도지시액에 초과되었다 하여 심계원의 주의도 받은바 있지만은 시정운영상 부득히 한 조치인 것입니다.
- 4) 도비직원의 도비 보조는 무망인 것입니다.

◇총무과장 장 건 식 보충답변

- 1) 신년도 동특예산편성은 불원간 의결부 측과 좌담회를 갖고 의견교환을 할 예정입니다.
- 2) 시립병원과 청소사업소인부의 증봉은 예산의 여유있으니 5%평균으로 증봉실시 하겠습니다.
- 3) 동특여비계상은 세입확보가 여의치 못하면 불가능한 형편입니다.

◇김 성 균 의원

- 양건공히 해당상임분과 위원회에 회부할 것을 동의하여 재청에 이어 삼청이 있어 표결한 결과 만장일치로 가결되다.

◇이 정 권 의원

- 사업비를 삭감하여서까지 임시 직원의 처우개선을 한다는 것은 언어도단이다.

◇의장 김 삼 성

- 회의법정시간인 4시가 임박하였으니 의안이 처결 되도록 까지 무제한 시간 연장할 것을 동의하여 재청에 이어 삼청이 있어 표결한 결과 만장일치로 가결되다.

◎ 단기 4291년도 제 2차 목포시 교육위원회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단기 4291년도 목포시 교육위원회 일시차입 안

◇교육감 박 세 문

- 제안이유 설명

◇김 경 인 의원

- 양건공히 해당상임분과 위원회에 회부동의에 재청에 이어 삼청이 있어 표결한 결과 만장일치로 가결되다.

◇부의장 강 영 락

- 산회 선언하다.

(하오 4시 30분)

위 회의록을 확인키 위하여 자이 서명 날인함.

단기 4291년 11월 12일

시의원 명 남 철

시의원 김 상 대

작성자 서기 주 도 식

제 90회 제 2차 목포시의회 회의록

1. 개 의 : 단기 4291년 11월 13일 상오 10시 50분
2. 폐 의 : 단기 4291년 11월 13일 하오 12시 30분
3. 장 소 : 목포시 의회 의사당
4. 사 회 : 부의장 강 영 락
5. 출석의원 : 재적 16명 중 출석의원 13명
결석의원 김남진, 박두순, 김창희 의원
6. 출석 공무원 : 시장 하동현 및 각 과장, 교육감 박세문 및 사무장

7. 의사일정

◆ 보고사항

- 각 분과위원회 회의사항 보고

◆ 부의안건

- 제1차 회의시와 동일함

8. 토의사항

- 각 분과 위원회 회의사항 보고

◇김 일 섭 의원 종합심의 보고

- 1) 단기 4291년도 제7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출 관五(오) 사회 사업비중 60만환증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국립학교에 보조하는 모순을 느끼고 삭감조치하고 기타는 무수정통과를 보았습니다.
- 2) 동특추경예산안은 무수정통과를 보았습니다.
- 3) 교육위원회 추경예산안은 문사위원회에서 보류된 안건으로서 내무위에서도 심의를 못하였습니다.

◇김 상 대 의원 보고

- 교육위원회 추경예산안을 보류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 1) 엄동에 임박한 차제 각 국민학교아동의 월동 대책이 막연한 것
- 2) 금반에 특별관공비 27만 환을 계상하였는데 채무 확정액의 과다함에 비하여 근소액을 증가하였으니 그 실정을 완전 파악 못한 점
- 3) 국내여비 222,100환 계상은 너무 많다는 것
- 4) 교직원 봉급을 정례급여일인 25일에 지급함은 당연한 일이라 하겠으나 의회측의 사전 의결없이 집행하였다는 점
- 5) 90년도 결산 통과 당시 특별부과금 유용액을 금년 9월말까지 충당하도록 서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공백상태에 놓여 있다는 점 등인 것입니다.

◇이 정 권 의원

- 본 건 상임위원회에서 보류시킨다함은 모순된 일이니 문교사회 위원회에서 비트한다든지 여부를 밝혀야 할 것이다. 본 회의에 즉각 상정 토의토록 할 것을 동의하여 재청에 이어 삼청이 있었다.

◇명 남 철 의원

- 방금 내무위원회에서는 그 소관 안건을 심의한 것처럼 보고하였으나 정족 수미달인 2인이 합의하여놓고 어떻게 합법화시키려고 하는가

◇정 응 표 의원

- 이정권 의원 동의에 찬성 발언하다.

- 이정권 의원 동의의 표결결과 만장일치로 가결되다.

◇부의장 강 영 락

- 부의안건 상정 선언하다.

◎ 단기 4291년도 목포시 교육위원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이 정 권 의원

- 문사위원회의 복안이 비트를 의미한 것인지 그 진위를 해명하여주기 바란다.

◇김 상 대 의원

- 비트 시킬 의사는 없는 것이다. 본 건 회기연장을 획책하여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자세한 심의를 가지고 싶은 것이다.

◇김 성 균 의원

- 교위추경예산안은 10월 23일에 교육위원회 통과를 경하였다는 말을 들었는데 10월말에야 당의회에 회부시켜 금반 회기에 본 안건을 상정시킴으로서 교직원 봉급을 의결 없이 사전 집행한 모순을 야기 시켰으니 이에 대한 법적인 근거가 어디 있으며 국고보조는 임의 집행할 성질의 것인지 확인하기 바란다. 그리고 각 국민학교 월동대책 경비등을 추산하여 본일 조차 없다고 하니 그 무성의함을 지적아니 할 수 없는 것이다.

◇김 경 인 의원

- 문사위원회에서 보류시켰다는 이유로
- 1) 교직원 봉급을 사전 집행하였다하나 그에 상당한 기정예산의 잔액이 있었으니 모순이 아니라고 보며
 - 2) 국민학교 아동 월동대책에 대하여는 이만큼 집행부 측에 충격을 주었으니 제3회 추경에나 제안하도록 할 것이고
 - 3) 특별부과금 유용액 충당에 대하여는 오는 12월 정기의회시 사무감사도 있을 것이니 그 기회에 추궁키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아져 이러한 이유로 비트 혹은 보류시킨다는 것은 대내외적으로 수치를 면키 어려운 일이니 신중을 기하여야 되리라고 보아진다.

◇정 응 표 의원

- 금반의 추경예산안이 주로 직원들의 처우개선을 하는데 있는것이고 각봉급자나 노동자들에 이르기 까지 교육세를 공제하는 차제 사친회비의 면제를 병자하여 각 국민학교에서는 학교 유지비라는 명목아래 기백환씩의 금품을 부과시킨다는 논의 태동한다는 설이 있는데 이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하여 주기 요망하는 바이다.

◇김 성 균 의원

- 교직원 봉급사전지불관계에 대한 도측과의 조희문을 낭독하여주기 바란다.

◇이 사무장 답변

- 1) 교직원 봉급을 의결 없이 사전 집행하였다고 말씀하시나 기정예산액의 잔고가 있었을뿐 아니라 공무원의 봉급은 25일이 되면 그 지불을 국가에 요구할 권리가 있는 것이고 본 건 도회계과 조씨에게 조회 하였던바 무방하다는 언질을 받았던 것입니다.
 - 2) 잡부금징수 금지책에 대하여는 각교장에게 엄첩을 내겠습니다.
 - 3) 그리고 각 국민학교 월동 책으로는 9백만원가량이 추산됩니다.
- 정응표 의원 퇴장 12시 10분 재석 12명

◇김 경 인 의원

- 각 국민학교에 물 끊여줄 정도의 경비는 본 의원이 천주교관계 구제 본부로부터 전달된 금액을 9만 환씩 배부하여서 이로 충당되리라고 보아지는데 모 국민학교에서는 중지하고 있다는 설이었는데 이를 어떻게 조치하겠는가

◇교육감 박 세 문

- 금시초문이다 조사하여 그러한 일이 있다면 계속시키도록 조치하겠다.

◇명 남 철 의원

- 본 추경예산의 총체적인 면을 살필 때 호별세부과금과 특별부과금은 감(감소)되었는데 징세경비는 증가되었는데 징세경비와 의무취학비를 삭감시킬 의사는 없는가

◇이 사무장 답변

- 1) 징세경비의 증가이유는 대체로 대다수의 빈민층 상대가 많은 관계로 그 징수에 애로가 많은 것이고

- 2) 의무 취학비 계상은 3인의 정식 TO가 있기 때문입니다.

◇김 일 섭 의원

- 토론종결동의에 재청에 이어 삼청이 있어 표결한 결과 만장일치로 가결
되다.

◇이 정 권 의원

- 금반 회기를 오는 15일까지 2일간 연장하여 본 건을 갱히 상임위원회에
회부토록 할 것을 동의하여 재청에 이어 삼청이 있어 표결한 결과 만장일치
로 가결되다.

◎ 단기 4291년도 제 7회 목포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 단기 4291년도 제 3회 목포시 동정 특별회계 세출경정 예산안

◇김 경 인 의원

- 본 건 역시 정족수 미달인 위원회의 심의라는 논의가 있으니 갱히 분과
위원회에 회부토록 하여 심의를 거치도록 할 것을 동의하여 재청에 이어 삼
청이 있어 표결한 결과 만장일치로 가결되다.

◇부의장 강 영 락

- 산회 선언하다. (하오 12시 30분 현재)

위 회의록을 확인키 위하여 자이 서명날인함.

단기4291년 11월 14일

시의원 박 석 희

시의원 이 정 권

작성자 서기 주 도 식

제 90회 제 3차 목포시의회 회의록

1. 개 의 : 단기 4291년 11월 15일 상오 10시 35분
2. 폐 의 : 단기 4291년 11월 15일 하오 1시 15분
3. 장 소 : 목포시 의회 의사당
4. 사 회 : 의장 김 삼 성
5. 출석의원 : 재적 16명 중 출석의원 12명
결석의원 김창희, 김남진, 이정권, 박두순 의원
6. 출석 공무원 : 시장 하동현 및 각 과장
교육감 박세문 및 사무장

7. 의사일정

◆ 보고사항

- 1) 각 상임위원회의 상황보고
- 2) 진정서 접수 상황 보고 - 영해동민
- 3) 유달 국민학교 실습지 관계조사 결과 보고
제 1차 회의시와 동일함

8. 토의사항

◎ 각분과 위원회 회의상황 보고

◇김 일 섭 의원

- 내무 위원회 종합심의 보고

- 1) 일반회계 제 7회 추경예산안은 관 사회사업비중 60만환 증액분만 삭감하
고 기타는 무수정 통과를 보았습니다.

- 2) 동특 경정예산안은 원안 무수정 통과를 보았습니다.
- 3) 교육 위원회 추경예산안은 문사위원회에서는 징세비(관) 전액 삭감 비품비 전액삭감 소모품비에서 10만원 삭감 여비에서 12만2천환 삭감한 안을 내무위원회에 회부되어 왔는바
 - 1) 여비는 문사위안대로 12만 2천환을 감하고
 - 2) 소모품비와 비품비는 원안대로 살렸으며
 - 3) 징세비중 잡급에서 571,000환과 운반비에서 150,000환만을 감하고 기타 통과를 보았습니다.
 - 4) 교육위원회 일시차입안은 집행부에서 철회하도록 되어있습니다.

◎ 진정서 접수 상황 보고 : 무허가 건축관계 영해동민

◇강 영 락 의원

- 소개 발언하다.
- 본 건 소방서장이 진두지휘하여 그 철거를 종용하여도 그 효과를 못내고 있는 것 같으니 해당위원회에 회부되면 집행부 측과 관계관서와 긴밀한 연락아래 처결지을수 있도록 참고로 발언하다.

◇의장 김 삼 성

- 내무위원회에 회부할 것을 선언하다.

◎ 유달 국민학교 실습지 조사결과 보고

◇김 상 태 의원

- 본 건 매매관계에 대한 서류 조사를 하였던바 서면상 절차는 완전구비 되어 있었으며 현금잔액이 12,000환 가량 있었습니다.

◇의장 김 삼 성

- 부의 안건 상정을 선언하다.

◎ 단기 4291년 제7회 목포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김 일 섭 의원

- 본 건 제반절차를 생략하고 원안 무수정 통과를 동의하다.

◇김 상 대 의원

- 본 건 내무위원회에서 수정한 사회사업비중 60만환감액을 살리고 집행부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무수정 통과하도록 수정동의에 재청에 이어 삼청이 있어 표결한 결과 만장일치로 가결되다.

◎ 단기 4291년 제 3회 목포시 동정특별회계 세출경정 예산안

◇김 성 균 의원

- 본 건 역시 원안 무수정 통과 동의에 재청에 이어 삼청이 있어 표결한 결과 가결되다.

◎ 단기 4291년 제 2회 목포시 교육위원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강 영 락 의원

- 1) 유달 국민학교 후문벽이 붕괴하여 2회에 공(결처)하여 절도가 침입하였다는데 금반의 예산면에 계상안 된 이유여하
- 2) 국정교과서 2학기분이 타처에는 전부 배부 되었다는데 유달학교는 일부분만 배부되고 있다는데 집행부 측에서는 이 사실을 아는지 여부여하

◇명 남 철 의원

- 징세비에 있어서 예산편성 요강보다 인상 되었음은 위법이라 지적하겠으며 징세비 직원 5명을 증가시킴으로써 체납세금을 완납할 수 있는가 확답하여주기 바란다.

◇이 사무장 답변

- 1) 유달학교 후문 벽보수문제는 구체적인 면을 조사하여 차기 추경에 계상 하겠습니다.
- 2) 국정교과서 배부지연관계는 교육장에게 말하여 시급 조치하겠습니다.
- 3) 여비 삭감에는 이의 없지만은

- 4) 소모품비 계상은 부채상환의 목적이고
- 5) 비품비 증가는 불가피한 도서구입에 필요하며
- 6) 징세비중 인쇄비, 소모품비 등은 고지서 수납부 조제에 필요한 불가피한 경비 인 것입니다.

◇조 양 순 의원

- 1) 영선비 미집행액의 집행방안 여하
- 2) 서부국민학교의 풍수해로 인한 피해부문의 복구대책여하

◇이 사무장 답변

- 1) 영선비의 미집행액은 곧 집행하겠습니다.
- 2) 각 학교의 안전을 두루살펴 앞으로 학교위주의 운영방침을 수립하려 합니다.

◇강 영 락 위원

- 1) 유달학교의 후문벽 보수는 시급 착수하여주기 바람
- 2) 유달학교 목조로된 15교실은 40년이 경과한 노후교실로서 그 대책을 시급 강구하여야 될 것이다. 집행부 측은 문교당국에 특별보조를 신청하도록 설계라도 하여본 일이 없는가

◇정 응 표 의원

- 교육청에서는 각 학교별로 잡부금 징수를 엄금시킨다하다 각 학교마다 부채에 시달리고 있다하니 이의 부채상황을 조사하고 그 대책을 강구하여 본 일이 있는가

◇김 상 태 의원

- 유달학교 실습지 문제에 대하여 동교사친회장은 아직껏 사친회재산이라고 하니 이에 교육감은 여하히 생각하는가

◇이 사무장 답변

- 1) 유달학교 노후 교실문제는 좀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되는 것이며 그 이유는 이를 움직이는데는 응분의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 2) 사친회비 단속 문제는 각 학교를 실지조사하여 선처하겠으나 법적으로는 위법이나 학부형들이 내부적으로 열성을 한다고 하면 답변드리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 3) 유달학교 실습지건은 과거지사이오니 관대한 처분 있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김 상 대 의원

- 1) 신영비자체를 타과목에 유용하고 있는 실정인데 유달학교 노후교실문제를 여비에 관련시키는 것은 부당한 일입니다.

- 2) 특별관공비 27만원을 계상하여 과거의 부채를 여하히 할 것인가 답변하여주기 바란다.

◇이 사무장

- 미납된 세금을 조속 징수하여 단시일내 처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 영 락 의원

- 학교가 무너져 가는데 노후교실에 대한 대책이 막연하다함은 지극히 유감스러운 문제이다. 국가예산은 수립되어 있을 터이니 어떠한 방법을 강구하여서라도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하여주기 바란다.

◇정 응 표 의원

- 그 문제에 대하여 박교육감은 어느 사석에서 본 의원에게 교섭하겠다는 언질을 받은바 있는데 하등의 말이 없음은 의심스럽다.

◇김 성 균 의원

- 중앙 국민학교의 지주가 썩어 들어가는데 늦어도 12월말까지는 보수하여야 될 것이다.

◇명 남 철 의원

-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교육청이 되어주기 바란다.

◇김 경 인 의원

- 신입 이사무장의 탁월한 역량을 믿고 이로써 토론을 종결하여 축조심의 할 것을 동의하여 재청에 이어 삼청이 있어 표결한 결과 만장일치로 가결되다.

◇김 일 섭 의원

- 징세비는 문사위원회안대로 전액 삭감하여야 된다.

◇김 상 대 의원

- 찬성 발언하다.

◇정 응 표 의원

- 내무위원회에서 문사위원회안을 수정시킨 이유는 신사무장에게 한번 일을 할수 있도록 맡겨보자는 것이며 일용 구출하여놓고 보는 것이 온당하다고 보아졌기 때문이다.

◇강 영 락 의원

- 국내여비일부를 삭감한다는 것은 행정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결론이 되는 것이다. 이를 집행부 요구대로 하여주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김 경 인 의원

- 정응표 의원의 발언에 찬성 발언하다.

◇김 성 균 의원

- 전문 위원회에서도 심사숙고하여 심의한 것을 내무위원회에서 수정한다는 것은 이해하기 곤란하다.

◇조 양 순 의원

- 교육청이 일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자는데 찬성하는 바이다.

◇김 상 대 의원

- 징세비를 삭감시켜놓으면 부정직원의 처단을 가져올 기회도 되는 것이고 강의원이 주장한 여비문제는 앞으로 10만환 가지고도 족하리라고 보아진다.

◇김 경 인 의원

- 집행부는 오늘의 회의진행을 거울삼아 직원들의 신상필벌주의에 전력을 다하기 바란다.

◇의장 김 삼 성

- 10분간 회의 중지 선언하다. (하오 12시 35분 현재)
- 속개 선언하다.

◇김 상 대 의원

- 문사위원회의 안은 부정직원에 대한 처단을 촉구하는데 있었는바 교육감은 지금 이 시각부터라도 이에 대한 단을 내릴 수 있다면 내무위원회안대로 찬동할 용의가 있습니다.

◇박 교육감

- 조사하여 부정이 있는 자라면 처단하겠습니다.

◇이 사무장

- 11월 말 현재로 조사하여 실현시키겠습니다.

◇강 영 락 의원

- 내무분과 위원회에서 수정한 안대로 통과할 것을 동의하여 재청에 이어 삼청이 있어 표결한 결과 가결되다.

◎ 단기 4291년 목포시 교육위원회 일시차입 안

◇의장 김 삼 성

- 본 건 집행부에서 자진철회를 신립하니 이에 대한 의견 여하
이의 없음

◇강 영 락 의원

- 당의회 위원회 조례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 이유는 내무위원회와 산업위원회의 비례가 안맞기 때문이다.

◇의장 김 삼 성

- 오는 정기의회에 본건 논의키로 보류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김 성 균 의원

- 오는 12월중에는 정기의회가 개최됨에 제하여 시정전반에 공한 사무감사를 12월 2일부터 실시할 것을 동의하여 재청에 이어 삼청이 있어 표결한 결과 만장일치로 가결되다.

◇의장 김 삼 성

- 유달국민학교 실습지 조사 관계를 정식 상정할 것을 선언하다.

◇김 성 균 의원

- 본 건 질서는 틀렸다고 보아지나 이미 학교재산으로 귀결이 지어졌으니 교육위원회에서 정식 취득결의를 얻고 예산에 편성하여 유달학교에 보조하는 형식을 취함이 좋을 것 같다.

◇김 경 인 의원

- 본 의원이 의원직에 당선된 이래 사리에 부당한 발언과 처사를 하였다고 느껴지는 기억은 추호도 없는데 본 의원이 5개 국민학교에 산재한 재산을 교육위원회재산으로 취득하라고 역설한데 대하여 모인이 정치성을 내포한 수단이라고 모함한다는 말을 듣고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바이다.

- 교육감은 이제부터라도 5개 국민학교에 있는 재산을 일일이 색출하여 정식수속을 거쳐 재산대장 혹은 비품대장에 등재하기 바란다.

◇강 영 락 의원

- 유달학교 사친회장은 지금도 시종 사친회 재산이라고 고집한다니 교육감은 자신이 사친회장을 만나고 이의 구제방법을 강구하여주기 바란다.

◇의장 김 삼 성

- 본 건을 토대로 하여 우리 의회의 결의로써 여사한 사례를 가져오지 않도록 각 학교에 경고문정도를 보내도록 하고 이로써 종결 지음이 좋을 것 같다.

◇정 응 표 의원

- 김성균 의원의 발언대로 하더라도 전후모순이 생기는 것이며 그렇다고 하여 합법화시킬 수는 없는 것이다. 결론은 우리의회에서 간섭할 것이 아니라 차후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하고 본 건 교육위원회에 일임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김 경 인 의원

- 찬성 발언하다.

◇김 경 인 의원

- 각 국민학교에 교의나 약국같은 곳과 거리가 먼 인사들로부터 (산토닝) 같은 것을 배부한다하니 교육감은 이러한 일을 경솔히 취급하지 말고 신중을 기하여주기 바란다.

◇의장 김 삼 성

- 폐회 선언하다.

(하오 1시 15분)

위 회의록을 확인키 위하여 자이 서명 날인함.

단기 4291년 11월 16일

시의원 김 일 섭

시의원 김 상 태

작성자 서기 주 도 식